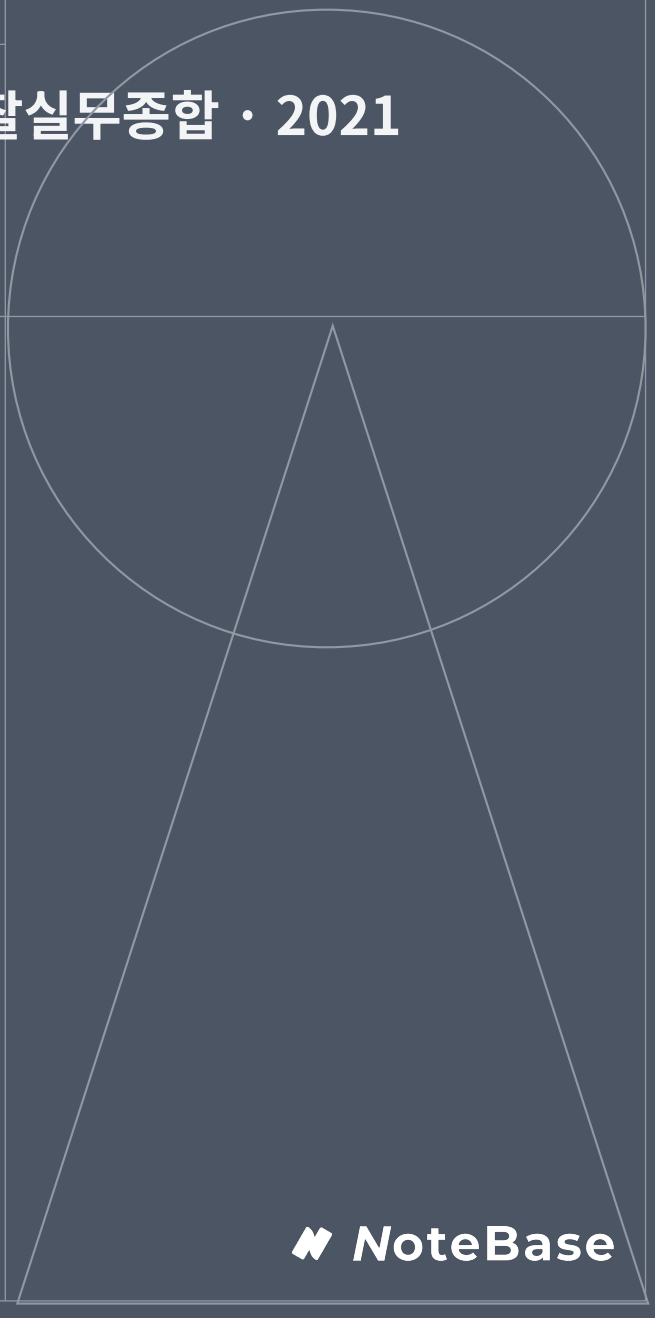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1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1

문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사무를 말하며, 이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통치권이 아니라 **일반통치권**에 근거한다. 국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소극적 질서유지작용**이다. 복지를 새롭게 증진하는 적극적 행정작용과 목적에서 구별된다.

② X: '특별통치권'을 **'일반통치권'**으로 고쳐야 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이러한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라는 설명은 부합한다.

③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보다 **실정법이 보통경찰기관에 맡긴 사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마다 법과 조직에 따라 경찰기관에 배분하는 임무가 다르므로 그 활동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④ O: 형식적 의미는 담당 기관과 법정 사무를, 실질적 의미는 작용의 목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보통경찰기관의 범죄수사는 형식적 의미에 해당하지만 소극적 위험방지를 뜻하는 실질적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일반행정기관의 건축·위생상 위험방지 활동은 실질적 의미에 해당하지만 보통경찰기관의 사무가 아니므로 형식적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2.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안맥결 총경은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였다.

② 이준규 총경은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 받아 후배 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③ 문형순 경감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하였다.

④ 백범 김구 선생은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 후 임시정부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김구는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시정부 경찰을 지휘했다. 일제의 밀정 감시와 요인 보호 등을 통해 임시정부의 정착을 뒷받침했다.

선지별 해설

① X: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으로서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을 거부한 인물은 **문형순 경감**이다. 문형순은 총살 지시 문서에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고 적어 부당한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했다.

② X: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받아 후배 경찰을 교육하고,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한 인물은 **안맥결 총경**이다. 이준규는 1980년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서 경찰 총기를 이동시키는 등 시민과의 유혈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③ X: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와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한 인물은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이다. 시위대를 지나치게 추격하지 않고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연행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시했다.

④ O: 김구는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여 임시정부 경찰을 지휘했다. 경무국은 일제의 밀정을 감시하고 요인을 경호하는 등 임시정부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김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임시정부의 정착에 이바지했다.

NoteBase

문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② 법규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③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4번

①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더라도 **위법한 관행에는 행정청의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평등의 원칙을 이유로 위법한 처분의 반복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②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성문법규**이다. 법률 등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위임명령**과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NoteBase

③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데 직접 관련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권리·의무를 정하지 못하고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형식만 정하는 것은 **집행명령**의 한계이다.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상위법령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NoteBase

문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 검찰, 법관,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2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위원 3인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회의)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위원 선임이 제한되는 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3.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 ·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oteBase

④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 운영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NoteBase

문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위탁은 행정기관의 장의 법정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임·수탁사무의 처리책임은 수임·수탁기관에 있고, 권한도 **수임·수탁기관의 명의**로 행사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25.3.4>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③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를 지휘·감독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지휘 · 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NoteBase

④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앞서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6.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다.

②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대기명령 기간 중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③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등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정답 4번

①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보직을 해제하는 불이익한 인사조치**여서 제재적 성격이 있다.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휴직에는 이러한 제재적 성격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2026.8.4>
1. 삭제<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NoteBase

②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경찰공무원법 제28조(직권면직)
② 제1항제2호 · 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NoteBase

③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4.25, 2018.9.18, 2018.11.20, 2021.8.31, 2025.1.24>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NoteBase

④

적격심사 요구로 직위해제된 사람의 봉급은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NoteBase

문 7.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등은 ①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성희롱 ·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임용권자등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조사를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조사 기간 중 **피해자등의 요청이 있고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면**,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게 **근무 장소 변경·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③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조사 결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에게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된다**.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22>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NoteBase

문 8.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④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5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4번

①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선물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등을 말하며 **현금은 제외**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2019.12.3>

②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개정 2016.6.28>

NoteBase

NoteBase

③

취업심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2025.8.14>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 · 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NoteBase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 ·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다. 건축 · 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④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재활·간병·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 · 재활급여 · 간병급여 · 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NoteBase

문 9.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따른 경찰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이나 주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간접적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②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③ 집행벌은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되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있고, 의무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감염병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는 모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3번

①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해 의무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직접적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과거의 의무위반을 제재하여 장래의 준수를 유도하는 경찰벌이 간접적 수단에 해당한다.

②

강제징수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전통적인 경찰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NoteBase

③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수단**이므로 과거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는 경찰벌과 목적·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경찰벌과 병과할 수 있고**,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종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로서 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집행벌, 직접강제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그리고 행정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게 되어 동일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반복 부과될 수 없지만 순수한 복종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그런데 건축법 제78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없이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한 것이고,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축주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가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 등의 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인 데 대하여, 후자는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를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시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위반행위까지 함께 평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무허가 건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건축법 제78조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전원재판부)

NoteBase

④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는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직접강제**이다. 즉시강제는 의무이행을 명할 여유가 없거나 명령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급박한 상황에서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NoteBase

문 10. 다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① 26
② 28
③ 33
④ 34

정답 4번

NoteBase

공통 해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다.
㉢ **14세 미만**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이다.
㉣ 법정 사유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 최초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다. 기간 만료까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 차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섯 수의 합은 5 + 5 + 14 + 1 + 9 = 34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NoteBase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oteBase

문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자살기도자를 발견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할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요청을 거절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 일시 보호하여 구호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경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정답 2번

①

자살기도자를 보호조치한 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보호조치 시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NoteBase

③

해당 처벌의 근거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19.1.15, 2020.4.7>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④

보호조치 권한이 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어도, 구체적 상황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위법**하다. 이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그리고 위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이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정신병원에의 장기입원이나 사회로부터의 장기격리와 같은 조치는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이 정한 경찰관의 권한을 넘는 것이고, 그 밖에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달리 위소외 1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없는데다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소외 1이 이 사건 살인범행에 앞서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기까지 그에 의하여 원심 판시 피해자들의 생명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그러한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위소외 1이 위 신석균의 집에서 나간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기까지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는바,이러한 구체적 상황하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관할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위조연을 데려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이 정한 긴급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가 퇴원하자 그로 하여금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의뢰를 하는 등 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이상, 더 나아가 위 경찰관들이 위조연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긴급구호권한 불행사로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NoteBase

문 1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 · 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 ·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 신체의 위해와 재산 ·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 ·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 · 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NoteBase

③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
2.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4.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 의견

④

최루탄 발사각은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는 15도 이상, 최루탄발사기는 3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3.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업무 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조직편성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정과 통합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

③ 계층제의 원리

④ 통솔범위의 원리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하는 것은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해당한다. 부서별 활동을 조직 전체의 목표에 맞게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풀이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부서나 구성원의 활동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조절하고, 조직의 공동 목표에 맞게 활동을 조화시키는 원리이다. 사례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업무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므로 이 원리가 적용된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구성원이 **한 명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도록** 하는 원리이다. 여러 상관의 상충하는 지시로 생기는 혼란을 막는 데 초점이 있으며, 사례의 자원 배분과 업무 간 우선순위 조정에 해당하는 개념은 아니다.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의 직위를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하의 단계로 배열**하고, 그 단계에 따라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이다. 조직의 수직적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므로 사례에서 묻는 갈등 조정의 원리와 구별된다.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한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사례의 '한정된 인력'은 여러 업무에 배분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단서이며, 상관 한 명이 감독할 부하 수를 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사례에 가장 적절한 조직편성원리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이며,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원인이 경찰관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폭력단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수사 중인 폭력단체 현황도 **공개로 수사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하나,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정답 3번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되,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으면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경찰 감찰 규칙 제12조(감찰활동의 관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현장인지나 진정·탄원 등 의무위반행위의 단서를 수집·접수한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 감찰 규칙 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 · 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 · 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격사유나 규정상 전보 허용 사유가 없는 감찰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제한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이다.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경찰 감찰 규칙 ①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 3. 질병 등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압 · 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NoteBase

④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의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경찰 감찰 규칙 ②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NoteBase

문 16. 「경찰 인권보호규칙」(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정답 2, 3번

①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간사인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1.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4조(점검) 제13조제2항의 간사는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NoteBase

②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를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경찰관서의 장**이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의2(경찰 인권교육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경찰관등(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서 같다)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경찰 인권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
3. 경찰 인권교육 실태조사 · 평가
4. 교육기관 및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5. 그 밖에 경찰관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를 즉시 중단하여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조사중지 규정과 다르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 이행할 수 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5조(조사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4. 감사원의 조사, 경찰 ·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
②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건 표지에 새롭게 사건을 재개한 사유를 적고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으면 **제출자의 요구 없이도 반환할 수 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2조(물건 등의 보관 등)
④ 조사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NoteBase

문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이 소속경찰서 경무계 직원들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회식비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A경위가 휴일날 인근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권에 당첨되어 수령한 수입차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자등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4번

①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이다. 경찰서장이 소속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하는 회식비가 이에 해당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

대형마트의 경품 추첨에 당첨되어 받은 수입차는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으로서 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NoteBase

③

친족인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가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④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무관한 수수 금지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문 18.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이다.

②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근면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의 문제'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3번

①

1945년 국립경찰의 경찰정신인 '봉사와 질서'는 미군정 아래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②

화합과 단결 속에서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경찰은 **'깨끗한 경찰'**이다. '근면한 경찰'은 전문지식을 갈고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을 뜻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부에서 요구한 타율성 때문에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비진정성 조장'**의 문제이다. '냉소주의'는 **구성원의 참여 없이 상부에서 강령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달**하여 구성원의 냉소적 반응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NoteBase

문 19.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론 중 '사회과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에 접촉·동조하면서 학습한다.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고,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주장하였다.

③ Matza & Sykes에 따르면, 청소년은 비행 과정에서 '책임의 회피', '피해자의 부정', '피해 발생의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 등 5가지 중화기술을 통해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

④ Hirshi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사회적 결속은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의 4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Cohen의 하위문화이론은 하류계층 청소년의 지위좌절과 집단적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므로 **사회구조원인**에 해당한다. 범죄의 학습이나 사회적 통제의 약화 과정에 주목하는 사회과정원인과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사회과정원인은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범죄를 학습하거나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아래 O/X는 각 이론이 사회과정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다.

① O: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범죄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 범죄적 전통이 전해지는 환경에서 친밀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범죄의 기술뿐 아니라 범죄에 우호적인 동기와 태도도 배우게 된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범죄를 학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므로 사회과정원인에 속한다.

② X: Cohen의 하위문화이론은 하류계층 청소년이 중산층의 기준에 따른 지위획득에 실패하여 좌절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고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본다. 계층적 지위와 그에 따른 좌절을 범죄의 배경으로 설명하므로 **사회구조원인**으로 분류한다. 선지의 이론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회과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발문의 답은 ②이다.

③ O: Matza와 Sykes의 중화이론은 청소년이 기존 규범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규범의 구속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켜** 비행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책임의 회피는 자신의 책임을 외부 사정으로 돌리는 것이고, 피해자의 부정은 상대가 피해를 당할 만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피해 발생의 부인은 실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의 위선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충성심에의 호소는 친구나 집단에 대한 의무를 사회규범보다 앞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중화 과정을 설명하므로 사회과정원인에 속한다.

④ O: 사회유대이론은 **사회와의 유대가 약해질수록 범죄를 억제하는 통제도 약해진다**고 본다. 애착은 부모·교사 등 타인에 대한 정서적 유대, 참여는 학업 등 관습적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 전념은 합법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 신념은 사회규범과 법의 정당성을 믿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네 요소가 개인을 사회에 결속시키는 통제 과정을 설명하므로 사회과정원인에 속한다.

문 20.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과 관련된 위치정보조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납치·감금·강도, 성폭력 등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②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또는 음성, 문자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자살기도자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③ 112 또는 119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이 접수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한다.

④ 위치정보조회는 112신고 접수시스템에 연계하여 위치정보 요청 및 정보를 수신한다.

정답 3번

①

납치·감금·강도·성폭력 등으로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면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구조를 요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 시 · 도경찰청 ·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생명 · 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NoteBase

②

유서·음성·문자 등으로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은 **긴급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 생명·신체 보호가 긴급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재를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으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NoteBase

③

112 또는 119로 접수된 긴급구조 요청에 따른 위치정보조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선지는 적용 법률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잘못 설명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 시 · 도경찰청 ·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생명 · 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개정 2018.4.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1. 화재 · 구조 · 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3.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④

위치정보조회는 **112신고 접수시스템과 연계하여 위치정보 요청과 회신 정보 수신을 처리**하고, 수신된 정보를 구조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활용한다.

NoteBase

문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상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할 경우 48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된다.

②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이 우려되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격리 응급조치의 기본 한도는 **48시간이 아니라 72시간**이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어 피해아동등의 보호상 필요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 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4.12.20>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024.12.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신설 2021.1.26>

NoteBase

②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으면**,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사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④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포함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NoteBase

문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동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연령확인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동법 제13조 제2항)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정답 2번

①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도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여 성을 팔도록 권하면 성매수 권유행위에 해당한다. 권유 전에 성매매 의사가 없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②

알선업자가 알선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면, **성매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알선업자는 처벌된다**. 성매수자의 인식 여부는 알선업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그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NoteBase

③

성매매 알선업자는 종업원의 연령을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④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되지만,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 및 장애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NoteBase

문 2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의 기본 방법 중 제1조건이다.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추측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수사결과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므로,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관이 한 판단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근거의 제시로서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함을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판단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감식과학과 과학적 지식·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다는 설명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에 해당한다. 다만 수사의 기본 방법 중 제1조건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한 다음 그 자료를 감식·검토한다.

② X: 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수집·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것이다. 추측은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가상적 판단**이므로,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후 검증적 수사를 통해 그 추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X: 검증적 수사는 여러 추측을 각각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어느 추측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이다. 먼저 무엇을 확인할지 정한 다음 그 사항을 어떻게 조사할지 결정하고 실제 수사를 수행하므로, 선지는 수사사항과 수사방법의 결정 순서를 바꾸었다.

④ O: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관이 내린 판단의 진실성을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단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화**해야 하므로, 수사관 개인의 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NoteBase

문 24.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색한 경우 증거물·몰수물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위법하다.

③ 피의자를 신문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④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리 명의로 검사에게 신청하고, 영장신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이 없으면 **그 취지의 수색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NoteBase

②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 ·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3>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3>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피의자를 신문하던 중 제출된 물건을 압수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어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 · 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 · 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9.29>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9.29>

④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청구하고 지방법원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NoteBase

문 25.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으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전화번호, ID 등이 포함된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관련 실시간 추적자료, 컴퓨터 통신·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 범인의 발견·확보,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

④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채록·유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우편물의 검열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있다.

정답 3번

NoteBase

①

일반협박·특수협박 등은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이나, **존속협박은 대상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 · 제172조 내지 제173조 · 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 · 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 · 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NoteBase

②

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 제3항 ·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NoteBase

③

보충성이 요구되는 자료는 **실시간 위치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이다.
컴퓨터통신·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자체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법정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필요한 자료는 보충성 요건의 예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 · 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 · 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6.9.29>
1. 제2조제11호 바목 · 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NoteBase

④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다. 검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유치하는 것이고, 감청은 동의 없이 장치로 통신 내용을 듣거나 읽어 취득·기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 · 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 ·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NoteBase

문 26. 다음은 리드(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의 순서이다. A부터 D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 대면 → 신문화제의 전개 → (A) → 반대논리 격파 → (B) → (C)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 (D) → 구두 자백의 서면화

① A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억지한다.

② B단계는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③ C단계는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고,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하여 자백할 것을 촉구한다.

④ D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C는 피의자의 소극적 태도를 다루는 단계이다. 동정과 이해를 보이며 **진실을 말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므로,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한다는 설명이 맞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리드 테크닉의 9단계에서 A·B·C·D는 각각 제3·5·6·8단계에 해당한다.

① O: A는 '부인의 처리' 단계이다. 앞 단계에서 전개한 신문 화제가 반복적인 혐의 부인으로 끊기지 않도록 **부인 진술을 제지하고 화제 전개를 이어 간다**. 따라서 수사관의 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부인 진술을 막는다는 설명은 이 단계의 취지에 해당한다.

② O: B는 '주의집중의 확보와 유지' 단계이다. 부인과 반대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거나 대화에서 심리적으로 물러날 수 있다. 이에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반복하며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여 **수사관의 말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③ X: C는 '소극적 태도의 처리' 단계이다. 피의자가 부인과 반박을 줄이고 수사관의 말을 듣는 상태가 되면,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이때의 핵심은 **계속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며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끝까지 추궁하여 자백을 촉구한다는 부분은 이 단계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O: D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 단계이다. 앞 단계인 양자택일적 질문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답을 얻었다면, 이어서 **피의자 자신의 말로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게 한다. 단순히 제시된 답을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술을 구체화한 뒤, 다음 단계에서 구두 자백을 서면화한다.

NoteBase

문 27.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적혈구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 침전현상으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하는 시체얼룩과 세포 가운데의 자가효소에 의해 세포구성성분이 분해·변성되는 자가용해는 모두 시체의 초기현상에 해당된다.

② 시체얼룩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선홍색을 띄고, 청산가리 중독사는 암갈색을 띈다.

③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도 사이에서 습도는 60~66%일 때 활발히 진행되는 부패와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시체의 밀랍화는 모두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된다.

④ 총기에 의해 사망한 시체의 경우,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관통총창이 대부분이나, 발사각도 등에 따라 회선총창, 반도총창이 있을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총알입구·사창관·사출구가 모두 형성된 총창을 **관통총창**이라 한다. 탄환의 진행 방향과 속도, 부딪히는 조직에 따라 회선총창이나 반도총창 등 다른 형태의 손상도 생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시체얼룩은 사후 혈액이 중력에 따라 몸의 낮은 부위에 고여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보이는 초기현상이다. 자가용해는 세균의 작용 없이 세포 자체의 효소가 세포 성분을 분해·변성시키는 현상으로, 이 시험의 경찰실무 분류에서는 **후기현상**으로 다룬다. 따라서 두 현상을 모두 초기현상으로 묶을 수 없다.

② X: 일산화탄소 중독사의 시체얼룩을 선홍색으로 설명한 부분은 맞지만, 청산가리 중독사에서도 **선홍색 계열의 시체얼룩**이 나타날 수 있다. 암갈색이나 황갈색은 염소산칼륨·아질산소다 중독 등과 연결되는 색이다.

③ X: 부패는 세균 작용으로 조직이 분해되는 후기현상이며, 통풍이 좋고 온도 20~30℃, 습도 60~66%인 환경은 부패가 잘 진행되는 조건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수분 보충이 끊겨 몸의 표면이 마르는 현상은 밀랍화가 아니라 **초기현상인 시체건조**이다. 밀랍화는 수중이나 습한 땅속 등에서 체지방이 밀랍·비누 같은 물질로 변하는 후기현상이다.

④ O: 탄환이 몸을 뚫고 나가 사입구인 총알입구, 체내 통과 경로인 사창관, 출구인 사출구가 모두 생긴 것을 **관통총창**이라 한다. 총창의 형태는 탄환의 진행 방향·속도와 부딪히는 조직 등에 따라 달라진다. 회선총창은 탄환이 뼈를 뚫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 사이를 돌아 지나간 경우이고, 반도총창은 속도가 약해진 탄환이 피부를 뚫지 못하여 피부까짐이나 피부밑출혈 등을 남긴 경우이다. 따라서 총기 손상이 관통총창 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 성립한다.

NoteBase

문 28. 경비경찰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경찰의 종류 중 치안경비란 공안을 해하는 다중범죄 등 집단적인 범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로 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② 경비경찰의 종류 중 혼잡경비란 기념행사·경기대회·경축제례 등에 수반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위적 혼란상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③ 경비경찰은 다중범죄, 테러, 경호상 위해나 경찰작전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진압해야 하는 복합기능적인 활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④ 경비경찰은 지휘관의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으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상황 발생 즉시 출동해 신속히 조기진압하는 것은 **즉응적 활동**의 특징이다. 복합기능적 활동은 **사전의 예방·경계와 사후의 진압**을 함께 수행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치안경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범죄사태**에 대응하는 활동이다. 다중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진압할 뿐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 예방·경계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② O: 혼잡경비는 행사나 경기 등에 모인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의 혼잡**에 대응하는 활동이다. 군중이 밀집하거나 무질서하게 이동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위적 혼란을 예방·경계·진압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범죄사태를 대상으로 하는 치안경비와 구별된다.

③ X: 다중범죄·테러·경호상 위해나 경찰작전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여 신속히 조기진압해야 한다는 설명은 **즉응적 활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복합기능적 활동'은 경비사태 발생 전의 예방·경계와 발생 후의 진압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④ O: 경비경찰은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부대가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하향적 명령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별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부대를 지휘한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관이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NoteBase

문 29.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경고하여 범죄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경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은 상대방의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이고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와 '체포'는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작전시의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병력이나 군중들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1번

①

경고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범죄 실행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실력행사**이다. 위험한 사태에서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그 근거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②

저항력이 가장 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시의 원칙**이다. **위치의 원칙은 상대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NoteBase

③

제지와 체포는 모두 직접적 실력행사이지만, **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다. 제지는 위험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체포는 형사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8.4>

④

경찰병력과 군중의 사고를 막고 안전하게 진압하는 것은 **안전의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은 상황과 대상에 맞게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히 운용**하여 한정된 병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이다.

NoteBase

문 30.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포함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④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정답 3번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2.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착근무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4.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일반요원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등**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하는 사람**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6.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등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④

가용경력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7.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 · 출장 · 교육 ·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NoteBase

문 31. 다음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과 명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주경비지역으로,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 돌발사태를 대비한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가 필요하다.
㉡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출입자 통제관리, MD 설치 운용,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필요하다.
㉢ 조기경보지역으로, 감시조 운용,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이 필요하다.

① ㉠ 안전구역 ㉡ 경비구역 ㉢ 경계구역
② ㉠ 경비구역 ㉡ 경계구역 ㉢ 안전구역
③ ㉠ 경비구역 ㉡ 안전구역 ㉢ 경계구역
④ ㉠ 경계구역 ㉡ 안전구역 ㉢ 경비구역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행사장 경호에서는 **출입 통제로 절대안전을 확보하는 안쪽 구역**이 안전구역이다. 그 바깥에서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주경비지역은 경비구역이고, 원거리에서 위험 접근을 조기에 탐지·차단하는 외곽은 경계구역이다.

대응 관계 해설

행사장 경호는 보호 대상이 있는 내부에서 외곽으로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을 두며, 각 구역의 위치와 주요 임무를 구분한다.

㉠ 경비구역: 제2선에 해당하는 주경비지역이다. **장애물을 설치하고 돌발사태에 대응할 인력·장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므로, 바리케이트 설치와 예비대 운영이 이 구역의 활동에 해당한다. 구급차와 소방차를 대기시키는 것도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 안전구역: 보호 대상과 가장 가까운 제1선의 절대안전 확보구역이다. **출입자와 반입 위험물의 통제**가 중요하므로 출입자를 관리하고, 금속탐지기인 MD를 설치·운용하며, 비표 확인과 출입자 감시를 실시한다.

㉢ 경계구역: 제3선에 해당하는 외곽의 조기경보지역이다. **위험한 접근을 먼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감시조와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하고, 원거리에서 불심자 검문·차단을 실시한다.

따라서 ㉠은 경비구역, ㉡은 안전구역, ㉢은 경계구역으로 연결되므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2.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학과시험 응시 전 받아야 하는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으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②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은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③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권장교육 대상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중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정답 4번

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1시간** 실시한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면제**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18.3.27>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3. 안전운전 능력
3의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6.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7.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NoteBase

②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 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7.10.24, 2020.12.22>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④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실시한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은 정기 교통안전교육**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NoteBase

문 3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②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답 2번

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②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이다. 이 행위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형법 제40조의 규정은 1개의 행위가 수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수죄로 경합하는 경우에 처벌상1죄로 취급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소론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적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피고인이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의하여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제40조와제109조 제2호,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죄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NoteBase

③

음주감지기의 반응만으로는 법정 음주상태에 있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콜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④

음주운전·약물운전·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되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이나 학교 경내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 · 제44조 · 제45조 · 제54조제1항 · 제148조 · 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NoteBase

문 34.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②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흉골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어 이십여차례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①

소극적인 음주측정거부는 거부행위가 계속되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가 없어도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불이익을 고지받고 최초 측정요구부터 15분이 경과했는데도 계속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2025년 표준안) 제31조
⑤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
3.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NoteBase

②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흉골골절 등의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워 반복하여 측정을 시도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 이상으로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흉곽용적을 많이 늘려야 하므로 골절편의 움직임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련의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피고인은 3시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NoteBase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숨을 부는 시늉만 하여 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여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공소외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그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데도 40여 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니,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NoteBase

문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시위'에 해당하려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용산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한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순수한 1인 시위는 동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집회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 종래의 학계와 실무에서는 2인설과 3인설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인이 모인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답 1번

①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할 개연성**이 있으면 시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일 필요가 없다**.

"시위(示威)"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집시법(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2호는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기타 옥외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그 중 "도로 기타 옥외장소"라는 부분만을 보다 명확하게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고쳤을 뿐 그 여타 부분은 아무 것도 고친 것이 없다.그렇다면 집시법 제2조 제2호의 "시위(示威)"는, 그 문리와 위 개정연혁에 비추어,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1)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2)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의 경우에는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인 장소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은 "시위"라는 개념의 요소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NoteBase

②

집회 여부는 명칭보다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철거민 옹호와 수사기록 공개 요구라는 공동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모임은 **기자회견 형식이라도 집회**에 해당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다.위와 같은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③

옥외집회와 시위는 별도로 정의되며,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순수한 1인 시위는 집단성이 없으므로 집시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2인이 모인 집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NoteBase

문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제한·금지·보완통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으며, 제한 통고의 경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SMS)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4번

NoteBase

①

법정 보호 사유가 있고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이라는 기한은 금지 통고에만 준용**되며, 제한 통고에는 별도의 법정 시한이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6.1.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NoteBase

②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면 **48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③

신고서 기재 사항이 미비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보완을 통고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은 24시간**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자 메시지(SMS)를 선택 가능한 통고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②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5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호물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1번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둔 사람이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NoteBase

②

체류국에 **5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보호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해외체류 관련 비보호 사유에는 **제3국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억류·감금·은둔·도피·강제혼인 등의 사정 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8>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4.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 · 감금 · 은둔 · 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의 법정 명칭은 **보호금품**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NoteBase

④

보호 여부는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한다. 보호신청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상 예외가 인정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 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3, 2019.1.15, 2021.4.20, 2024.1.9>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1의2.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의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 · 종료에 관한 사항
3의3.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0>

NoteBase

문 38. 다음 비밀공작의 순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령 → 계획 → 모집 → 훈련 → 브리핑 → 파견 및 귀환 → 디브리핑 → 보고서 작성 → 해고

① '모집'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과정이다.

② '브리핑'은 공작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상황과 임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하는 단계로, 공작원에게 공작수행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 이루어진다.

③ '파견 및 귀환'은 공작계획에 따라 공작을 진행할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다.

④ '보고서 작성'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브리핑'은 공작원을 파견하기 전에 새로운 상황과 구체적인 임무를 알려 주는 **최종 설명 단계**이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마친 뒤 실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단계는 **'훈련'**이다. '모집'은 공작계획에 따라 공작을 수행할 사람을 선발·채용하는 단계이므로, 인원을 확보하는 일과 확보한 인원을 교육하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

② O: '브리핑'은 훈련을 마친 공작원이 **파견되기 전에 임무에 관한 최종 설명**을 듣는 단계이다. 공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황을 알리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시를 전달하므로, 선지의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공작계획에 따라 공작을 진행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모집'**이다. '파견 및 귀환'은 준비를 마친 공작원을 임무 수행 지역으로 보내고, 임무를 마친 뒤 돌아오게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는 단계와 실제 임무 수행을 위해 보내고 복귀시키는 단계를 바꾸어 설명했다.

④ X: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조직화하는 것은 **'계획'**이다. '보고서 작성'은 공작 종료 후 디브리핑 등으로 파악한 공작 수행 내용과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수행 전에 방법을 설계하는 일과 수행 후 결과를 기록하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39. 범죄인 인도에 관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제9조는 절대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③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인만 인도한다는 원칙이다.

④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정답 1번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 대상 행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국의 법률에 따라 모두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한쪽 국가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인도할 수 없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가벼운 범죄는 인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우리 법은 양국 법률상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하여 인도를 허용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NoteBase

④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청구국이 **인도 허용 범죄 외의 처벌과 제3국 인도를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문 40. 여행경보단계 중 해외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해외여행 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단계는?

① 남색경보
② 황색경보
③ 적색경보
④ 흑색경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해외 체류자의 신변안전 특별 유의와 여행 예정자의 불필요한 여행 자제는 **황색경보(2단계·여행자제)**의 행동요령이다.

개념 구분

남색경보는 1단계인 여행유의 단계이다. 해외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유의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에 유의한다. 특별한 주의와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요구하는 황색경보보다 낮은 단계이다.

황색경보는 2단계인 여행자제 단계이다. 해외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한다. 발문에서 제시한 두 행동요령이 모두 이 단계에 해당한다.

적색경보는 3단계인 철수권고 단계이다. 해외 체류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여행을 자제하는 수준보다 강한 대응을 요구한다.

흑색경보는 4단계인 여행금지 단계이다. 해외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하며, 여행 예정자는 해당 지역을 여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발문에 해당하는 단계는 ② 황색경보이다.

NoteBase